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75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 박상혁 • 박용갑 • 김한규

이해식 · 강준현 · 양부남

조승래 • 노종면 • 정일영

김주영 · 최기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 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1조의3 신설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01조의3을 위반한 경우
- 제9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01조의3을 위반한 경우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1조의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의 제한)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 사이었던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
 - 가.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3. 그 밖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 공 정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헊대리젂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제10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	등) ①		
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제101조의3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	등) ①		
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101조의3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01조의3(공시대상기업집단 소		
	속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의 제		
	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		
	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제101 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근(常勤) 임 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 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 또 는 법인보험중개사 가.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

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 발행주식총수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의 10 인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 험중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